
Policy and Law Report _Vol.134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05.02.~ 2022.05.08) -

May 9,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p>•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ESS 안전 강화대책」 추진</p> <p>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저장장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그간 현장 감시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실시간 안전운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사전 화재 예방 체제를 구축하여 안전관리의 선진화도 도모할 계획임</p> <p>3차 전기저장장치 화재 조사결과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p> <p>① (배터리)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조공정 개선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전을 제한 변경 등) 글로벌 추세를 반영하여 충전을 제한 → 보증수명으로 변경하고, 배터리셀의 열폭주 방지를 위해 적합성 인증 의무화 추진 * (현행) 충전을 제한 : 옥내 80% 이하, 옥외 90%이하 → (개정) 배터리 보증수명 기준으로 용량 설계, 사용자는 보증수명 용량 이하로 사용 - (지락보호장치 동작기능) 지락사고 발생 시 절연저항이 제조사 기준치 이하일 때 경보가 울리도록 안전기준 개정 추진 - (공정개선) 배터리 제조사는 배터리 제조공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개선 및 배터리 교체 실시 <p>② (운영관리) 자체 소화시스템 설치, 배터리실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감압배출기능 설치를 추진하고, 주기적 안전점검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소화설비) 화재확산 방지 자체 소화시스템*을 추가하고, 정상적인 동작여부를 확인하도록 기준 개정 추진 * 배터리소화설비: LG에너지솔루션(주수식), 삼성SDI(약품분사) - (배기시설) 배터리실 내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한 내부압력이 발생한 경우 내부압력 감압을 위한 배출기능 설치토록 기준 개정 추진 - (안전관리) 일상점검을 위한 안전관리자의 주기적 점검 의무화 (1회/월)*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개정 및 점검기록표 신설 ('22.1 시행) <p>전기저장장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 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연구개발·보급)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발전제약 완화를 위해 비리튬계·장주기·고신뢰 전기저장장치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한전 등 공공기관 주도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전기저장장치를 설치</p> <p>② (인력양성 등) 단기적으로는 법정교육에 전기저장장치 안전관리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p>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신규, 1회/3년에 법정교육 의무화	2022-05-02

부처	내용	일시
	<p>③ (전기안전 플랫폼)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저장장치 등 통합 전기안전 플랫폼을 구축하여 안전점검·검사를 사람중심에서 디지털체계로 전환</p>	
보건 복지부	<p>• 2022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p> <p>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1회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고,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27) 수립계획과 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 추진현황,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추진상황을 보고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신약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국가 신약개발 사업 지원 확대('21년 451억원→'22년 1,342억원, 113개 과제 계속지원, 130개 과제 신규) - 재생의료 원천기술 확보 및 임상연계를 위한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지원 확대('21년 128억원→'22년 381억원, 51개 과제 계속지원, 56개 과제 신규) - 코로나19 등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22년 973억원) <p>②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 생산·공정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및 K-NIBRT* 교육 프로그램 운영 ('21년 240억원→'22년 300명, 125억원) * 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 Training: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일랜드 바이오전문인력양성센터와 교육과정 운영계약을 체결 -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정보기술(IT) + 생명공학기술(BT) 융합형 인재 양성 교육 확대 ('22년 275명, 10억원), 의사 과학 학부과정 지원 ('22년 90억원) 	2022-05-04
식품 의약품 안전처	<p>•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을 위한 규제과학 역할·방향 논의</p> <p>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격에서 선도로! 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규제과학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와 함께 '제4회 규제과학 혁신포럼'을 개최함</p> <p>이번 포럼은 사회적 변화와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규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과학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식품·의약품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과학의 방향, 규제과학 발전을 위한 식약처의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시장에 도입하기 위한 규제과학의 중요성, 푸드테크 발전에 필요한 규제기관 역할과 규제서비스의 필요성, 규제과학 발전을 위한 식약처 추진전략 <p>② 의료계·학계·업계 전문가가 함께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규제과학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있음</p>	2022-05-03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행정 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5.3. 시행) <p>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자가 등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회계법인을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회계법인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보고서 중 중요 사항의 별도 공시 의무 이행 대상을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으로 한정하는 한편,</p> <p>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감사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의 외부 공개업무 등의 위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2022-05-03
문화체육 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23.5.4. 시행 예정) <p>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관광특구의 지정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가 있음</p> <p>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관광특구의 지정, 지정취소, 면적조정, 개선권고 등의 사무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시장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p>	2022-05-03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문화체육 관광부	<p>•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11.4. 시행 예정)</p> <p>현행법은 골프장업을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과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대중골프장업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면제, 취득세 및 재산세 종과세 적용 제외, 체육진흥기금 용자 우대 등 회원제 골프장업에 비하여 상대적 혜택을 다수 부여하고 있음</p> <p>그런데 최근 상당수의 대중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을 상회하는 이용료 인상, 유사회원 모집 등의 편법 영업행위, 고가의 식음료 이용 강요 등 국민체육 진흥 및 골프대중화 정책의 취지와 상충하는 영업행태를 보임에 따라, 형식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으로 등록되지만 하면 실질적인 영업행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각종 세제 및 지원정책 혜택의 대상이 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대중화 정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p>	2022-05-03
환경부	<p>•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5.3. 시행)</p> <p>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p> <p>*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의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p>	2022-05-03
	<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5.3. 시행)</p> <p>합성수지재질 제품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포장재의 제조 또는 수입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어망,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등 15개 품목을 추가하되, 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p>	2022-05-03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국토 교통부</p>	<p>•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22.5.3. 시행)</p> <p>현행 규정상 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에서 도시공원 조성이 포함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차액의 일부를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와 조성한 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해야 하는 의무가 중첩하여 적용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민간사업자가 기부채납한 도시공원의 조성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p> <p>준공된 산업단지 내에서 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실수요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력 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교지(校地)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임대료 등을 산정하는 다른 산업단지의 임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은 1년간의 임대료로, 임대료는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는 등 적정 임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p>	<p>2022-05-03</p>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p>•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p> <p>상시·비대면·원격점검 체계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전기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격점검 결과 등 대국민 전자고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기관(행정안전부)의 자료활용 근거 마련 (안 제14조의2 신설) ② 효율적 원격점검 운영·관리를 위해 ‘관제센터’ 위탁 근거 마련 (안 제17조제3항제6호 신설) ③ 안전점검 결과 등 고지에 대한 사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 18조) ④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 규정 정비 (안 별표 5) <p>※ 의견 제시기간 : 5/6(금)~5/30(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로 제출</p>	2022-05-06
국토 교통부	<p>•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유사업종과의 형평성 제고 및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85호, 2022. 1. 18. 공포, 2022. 7. 19. 시행)됨</p> <p>그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p>현행법령은 물류단지 안에 있는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설치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p> <p>그런데 현재 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이 존치시설의 가치나 용도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타 시설부담금 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용도별 가중치를 반영한 방식으로 산정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p>	2022-05-04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한편, 현재 시설부담금의 일부 감면대상은 공공성이 부족하고 감면비율 산정근거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일부 감면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부담금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시설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등 징수절차와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납부 의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p> <p>또한, 과태료 부과처분 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 누적 차수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의 법정 과징금 상한액 상향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정비하고, 물류창고업 과징금 규정이 분리·신설됨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 부과 및 납부,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안 제7조~제9조 및 별표 1) ② 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을 유사 개발사업과 형평에 맞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존치시설의 용도별 가중치 등을 반영하도록 개선함 (안 제34조제5항 및 별표 1의2 신설) ③ 시설부담금의 일부 감면제도를 폐지함 (안 제34조제5항 단서) ④ 시설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등 징수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납부 의무자의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를 신설함 (안 제34조제6항 및 제8항 신설)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고,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안 별표 3) <p>※ 의견 제시기간 : 5/4(수)~6/14(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첨단물류과)로 제출</p>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고용 노동부	<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관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수수료의 수준 및 기준 등이 운용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752호, 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행)됨</p> <p>이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요건,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요건 (안 제13조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설명서 상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내용이 운용계획에 명시되어 있을 것 등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세부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p>②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안 제13조의2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위험등급 및 위험수익구조, 자산배분현황 등의 정보를 서면 혹은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공하도록 함 <p>③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 통지 (안 제13조의3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 등을 함께 통지하도록 함 <p>④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안 제13조의4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변경 승인 후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사유 등에 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 승인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p>⑤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 (안 제13조의5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사전지정운용방법 관련하여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등을 분기에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함 	2022-05-0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⑥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관리 (안 제13조의6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받은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지정운용방법 승인이 취소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취소 사유 등에 대한 통지,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적립금 이전 등 가입자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하여 매 3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승인 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p>⑦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 (안 제24조의2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별로 구분, 비용과 운용손익에 대한 고려,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혜택 제공 등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p>⑧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 행위 (안 제34조제1항제8호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운용함에 있어 제1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가입자의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등을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추가함 <p>※ 의견 제시기간 : 5/3(화)~6/13(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로 제출</p>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고용 노동부	<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 <p>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과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572호, 2022. 1. 11. 개정,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사용자에게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심의위원회 구성 (안 제8조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하고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에서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요건을 갖춘 사람 등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함 (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p>② 사용자에게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제시방법 (안 제8조의2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영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함 <p>※ 의견 제시기간 : 5/3(화)~6/13(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로 제출</p>	2022-05-0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공정거래 위원회</p>	<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p> <p>최근 불법 위해제품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구매에 앞서 제품의 안전성·적법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제품 인·허가 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토록 하고, 리퍼브 가구의 하자(瑕疵)에 관한 정보, 설치형 가전제품의 설치비용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알기 쉽게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판매화면 등에 표시할 정보의 내용을 추가하고, 그 표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고시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인·허가 정보 표시방법을 명확히 규정 (안 II.6. 개정, IV.2.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C 인증 대상품목과 같이 인·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인·허가 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토록 규정 <p>②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관한 정보제공 항목 추가 (안 III.1.(6)·(7)·(8)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퍼브 가구의 경우 하자 부위 및 하자 사유에 관한 정보 추가 - 대형·설치형 가전제품의 경우 추가설치비용 정보 추가 <p>③ 품목별 필수정보 현행화 및 사업자를 위한 정보제공 지침 추가 (안 II.4.7, III.1.(15)·(16)·(18)·(20)·(21)·(22)·(23)·(26)·(37)·(38), III.2.나·다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의 경우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유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기본상품과는 전혀 별개의 상품을 추가선택형 상품(옵션 상품)으로 판매할 경우 그 추가선택형 상품에 해당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함을 안내 - 사업자가 법령상 보장되는 소비자의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지 않도록 청약철회의 조건·기한 등에 관한 정보제공 지침 제시 - 개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품목별 정보제공 항목을 현행화하고, 사업자가 혼동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정보제공 지침 추가 <p>※ 의견 제시기간 : 5/3(화)~5/23(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과)로 제출</p>	<p>2022-05-03</p>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공정거래 위원회	<p>•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미지급에 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해 납품업자가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8111호, 2021. 4. 20. 공포, 2021. 10. 21. 시행)과 같이 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매장임대차거래에서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에서의 상품대금을 명확히 구분하며, 현행 인터넷쇼핑몰업자를 PC·모바일 등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대금미지급 자진시정 시 과징금 미부과 (안 별표1제1호나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중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금미지급의 경우 당사자 간 금전분쟁의 성격이 강하므로 과징금 등 행정제재보다 자진시정 유도를 통한 납품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유통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지급한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금미지급을 자진시정 할 수 있도록 하여 납품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p>② 기타 용어 정비 (안 제2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 안 제2조제3항, 안 제5조 제4호 및 제5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약매입거래 등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을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경우로만 한정된 ‘인터넷쇼핑몰업자’의 용어를 PC·모바일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변경함 <p>※ 의견 제시기간 : 5/4(수)~6/13(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유통거래과)로 제출</p>	2022-05-04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p> <p>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소비생활의 방식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고령, 장애 등의 사유로 소비생활에 제약을 받는 소비취약계층의 불편함은 오히려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p> <p>그런데 현행법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비취약계층의 안전과 소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p> <p>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취약계층의 안전과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취약계층의 편리한 소비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5호 및 제19조제6항 신설 등)</p>	2022-05-03
정무위원회	<p>•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p> <p>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실 회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p> <p>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기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신고 민원의 신고수리 여부 등 통지기간(안 제18조제4항, 제22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8항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각각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2022-05-04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통지 의무 등 (안 제27조의2 및 제53조제3항제9호의2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가 직접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에게 확인하지 아니하고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p>③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의 보완 (현행 제42조제4항 삭제, 안 제47조제4항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부과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분할 등에 따른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와 과징금의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p>④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 제53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2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정 상태를 오인하여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그 보고서를 공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함 	
행정안전위원회	<p>•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p> <p>정부는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제고하고 유형별·가격대별 시세반영 격차를 해소하는 취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2020년 11월 3일 발표함.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의 재산세 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p> <p>이에 대하여 '20년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3년 간 0.05%p 인하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시행하였으며, '21년에는 특례 적용 대상을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p> <p>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시행 첫해인 '21년에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 등에 의하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5% 상승하는 등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22년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2% 상승하는 등 2년 연속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유례없는 상황에 직면함.</p>	2022-04-29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계 부담이 가중된 점을 감안할 때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전까지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가 필요함</p> <p>이에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2022년도에 한하여 전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2021년 시가표준액 또는 2022년 시가표준액 중 적은 것을 적용하여 2022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는 특례 도입 (안 제36조의4)</p> <p>•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1인)」</p> <p>현행법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면 생애 최초로 3억원(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p> <p>그러나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 3억원을 넘으면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여 최근 급등한 주택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부부가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제외되어 있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도입된 특례의 본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현행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대상의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6억원(수도권의 경우 7억원)으로 상향하며, 감면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임 (안 제36조의3)</p>	2022-05-03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0인)」</p> <p>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고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p> <p>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하나의 정보에 대한 권리여서 이러한 정보들이 남발되거나 이러한 정보의 유통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 게시판 등이 운영되는 경우 피해자 개인이 방대한 규모의 개별 정보들을 상대로 일일이 대응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p> <p>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는 바 이에 대하여 더 적극적인 대안을 현행법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음</p>	2022-04-29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이에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유통되는 전체 정보 중에서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다수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의 운영 중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6항에서 제8항까지, 안 제44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p>	
<p>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p>	<p>•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등 15인)」</p> <p>액화석유가스(LPG)는 전기, 도시가스(LNG), 석유 등과 함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액화석유가스의 가격도 함께 상승하고 있음</p> <p>이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소득 대비 에너지 사용비용이 높은 취약계층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액화석유가스의 이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에너지 복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p> <p>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복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난으로 인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또는 취약계층에게 액화석유가스의 이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47조의2 신설)</p>	<p>2022-04-29</p>
<p>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p>	<p>•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3인)」</p> <p>제조업 창업활성화와 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007년부터 현행법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의 부담금을 면제해 오고 있는데, 동 법조항은 5년 단위 일몰을 통해 효력을 연장해 왔으며 2022년 8월 2일 일몰될 예정임</p> <p>최근 창업기업 숫자가 줄어드는 제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창업기업의 창업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2021년 동 법 전부 개정시 부담금 면제기간을 창업 후 3년간에서 7년간으로 확대한 바가 있어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p> <p>이에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기한을 현행 일몰기한인 2022년 8월 2일부터 5년 더 연장함으로써 제조업 창업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욱 활발한 창업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 (안 부칙 제2조)</p>	<p>2022-05-03</p>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환경노동위원회	<p>•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의위원 등 11인)」</p> <p>현행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적용제도를 두고 있음.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5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음</p> <p>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이에 오프라인에서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다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p> <p>이에 보다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이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징수 체계와 급여·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산재보험을 ‘사업주 책임보험’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발전시키고자 함</p> <p>이와 함께 개정법률 공포 이후 시행일 전까지 주된 사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도 산재보험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31조 제1항, 안 제53조 제1항, 안 제53조 제2항 삭제, 안 제91조의15부터 제91조의20까지 신설 등)</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노무제공자의 범위로 확대 (안 제91조의15 및 제91조의16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 범주로 재정의함 -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도 이 법의 보호대상을 명확히 함 - 산재보험 적용직종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직종 선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함 <p>②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 (안 제91조의17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 보수 개념을 신설함 - 평균보수는 노무제공자가 재해 발생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재해발생 사업 외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 및 근로자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 - 평균보수는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증감함 	2022-05-0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③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안 제91조의18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준용하되 구체적 인정기준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p>④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지급 (안 제91조의19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 보수를 산정하여 그에 따라 지급함 - 공단에 신고된 보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보험료에 대한 정정신고를 거쳐 보험급여에 대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p>⑤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 특례 (안 제91조의20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업급여 최저기준을 적용하고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p>⑥ 부분 휴업급여 산정방식 개편 (안 제5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제라도 ‘일시적 노무제공’이 가능한 노무제공자가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개편함 - 새로운 부분 휴업급여 산정기준은 노무제공자와 근로자에게 동일 적용함 <p>⑦ 노무제공자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 (현행 제125조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 제도는 폐지하되, 소득 파악이 곤란한 골프장캐디 등 일부 직종 종사자가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보험료 부과를 제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휴업등 신고제도” 도입 <p>⑧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의무 부여 (안 제116조제4항, 제5항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 노무제공 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고 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 - 플랫폼 종사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플랫폼 운영자에게 본인의 노무제공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5/13(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87호 발간	
국회도서관	5/11(수)	입법정보자료 World & Law 발간 - 핸들 없는 자동차가 도로를 달린다고	
	5/12(목)	「현안, 외국에선?」 제35호 발간 -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국제사회 및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입법조사처	5/12(목)	「NARS 입법·정책」 제105호 발간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5/12(목) 10:00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 연속간담회 (1차) 개최 -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적자 추이 분석	

[별첨1] 제396회 국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인사청문회 포함)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법사위	5/9(월) 10:00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외통위	5/12(목) 10:00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권영세)
국방위	5/9(월) 09:30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이종섭)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안위	5/13(금) 10:00	인사청문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 김필곤
	5/13(금) 14:00	인사청문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 노태악
문체위	5/9(월) 16:00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자위	5/9(월)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5/9(월) 10:30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5/11(수) 10:00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환노위	5/9(월) 10:00	환경법안 심사소위	- 법안 심사
	5/9(월) 14:00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	- 법안 심사
여가위	5/11(수) 10:00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5/9(월) 14:00	강화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김성환 의원실, 한국무역협회 외	의원회관 2소회의실
5/10(화) 14:00	기초의회 선거제도 진단과 대전환 방안 - 지방정치 대전환, 완전비례제로 디자인하자	김두관, 배진교, 조정훈 의원실 외	의원회관 1세미나실
5/11(수) 09:40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어떻게 해야하나?	한무경 의원실, 한국경영자총협회 외	의원회관 1소회의실
5/11(수) 14:30	예산 편성·심의 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	맹성규, 김진표, 김한정 의원실 외	의원회관 3세미나실
5/12(목) 10:00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조응천, 김교홍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5/12(목) 13:30	K-바이오헬스 포럼 7차 - 감염병시대 약사와 약국의 역할	전혜숙 의원실, 서울시약사회 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5/13(금) 13:00	새 정부 출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와 정책 방향	박성중 의원실, 한국기업법학회 외	의원회관 2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33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5/2(월)	「행정입법 분석(제10호): 조세분야」 발간 -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중 조세분야 행정입법의 법률의 취지 부합 여부 등을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	
국회도서관	5/3(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92호 발간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입법례	
입법조사처	5/4(수)	이슈와 논점 1942호 연구보고서 -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과 디지털 권리 강화를 위한 과제	
	5/6(금)	이슈와 논점 1943호 연구보고서 -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과 입법과제	
	5/6(금)	이슈와 논점 1944호 연구보고서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	
미래연구원	5/2(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44호 발간 -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을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파트너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서예지** | 소속변호사 T. 02-316-1787 E. yjiseo@shinkim.com
- **나인선** | 소속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문응필** |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 **최유리** |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소속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김은혜** | 소속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